

## 국가보위입법회의법

[시행 1980.10.28.] [법률 제3260호, 1980.10.28., 제정]

<한시:1981.4.10.>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입법회의(이하 "입법회의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권한)** 입법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.

**제3조(구성)** 입법회의는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행정 기타 각계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50인이상 100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4조(개회)** 입법회의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회한다.

### 제2장 기관과 경비

**제5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** ① 입법회의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.

② 의장과 부의장은 입법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,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③ 최초로 개회되는 입법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.

**제6조(의장의 직무)** ① 의장은 입법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감독한다.

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**제7조(사무처)** ① 입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
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, 사무처장은 의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**제8조(도서관)** ① 입법회의에 도서관을 둔다.

② 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, 도서관장은 의장이 임명한다.

**제9조(경비)** 입법회의의 경비는 국회의 예산으로 충당한다.

### 제3장 의원

**제10조(선서)** 의원은 최초의 입법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. "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."

**제11조(의무)**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,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특권)** ① 의원은 입법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입법회의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② 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회의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.

**제13조(검직등)** 의원은 검직 또는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.

**제14조(사임)**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
## 제4장 위원회

**제15조(위원회의 종류)** 입법회의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.

**제16조(상임위원회의 직무)**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한다.

**제1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**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운영위원회
  - 가. 국가보위입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- 나.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기타 국가보위입법회의규칙에 관한 사항
  - 다. 국가보위입법회의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라. 국가보위입법회의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마.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2. 법제사법위원회
  - 가.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나.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다.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라. 헌법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
  - 마. 법원·군법회의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
  - 바.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
  - 사. 법률안·규칙안의 체계·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
3. 외교국방위원회
  - 가. 외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나.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다. 국토통일원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라.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
4. 내무위원회
  - 가. 내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나. 중앙정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
  - 라. 총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마. 서울특별시소관에 속하는 사항
5. 경제제1위원회
  - 가. 경제기획원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나. 재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다. 농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라. 상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마. 동력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바. 과학기술처소관에 속하는 사항
- 사. 경제과학심의회사무에 관한 사항
- 6. 경제제2위원회
  - 가. 건설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나. 보건사회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다. 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라. 체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마. 원호처소관에 속하는 사항
- 7. 문교공보위원회
  - 가. 문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나. 문화공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

**제18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**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.  
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  
 ③ 상임위원은 의장이 선임한다.

**제19조(위원회의 위원장)**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  
 ②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.  
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, 사무를 감독한다.  
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의사일정을 정한다.

**제20조(간사)**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  
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감독하고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**제21조(전문위원)**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.  
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.  
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, 의장의 허가를 얻어 입법회의의 회의(이하 "본회의"라 한다)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**제22조(특별위원회)** ① 입법회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 ②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 
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**제23조(위원회의 의사·의결정족수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4조(위원회의 심사)**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, 질의·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**제25조(방청)** 위원회에서 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26조(공청회)**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·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 
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27조(심사보고)** ①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 
 ②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**제28조(준용규정)**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외에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5장 회의

### 제1절 개회와 의사

**제29조(개회일시)**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**제3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**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 
 ② 본회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석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**제31조(의사일정)**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32조(회의의 공개)**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
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.  
 ③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.

**제33조(발언)**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 
 ②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.  
 ③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그러나 질의·보충발언·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 
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34조(안건심의)**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·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질의 또는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.

**제35조(회의록)** 입법회의는 본회의의 의사일정, 출석의원의 사,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.

## 제2절 의안의 제출과 심의

**제36조(의안의 제안)** ① 의원은 7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.  
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**제37조(의안의 위원회 회부)** ① 의장은 제안된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,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 
 ②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.  
 ③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

**제38조(수정안)** ① 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.  
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.

**제39조(법률안의 체계심사)**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**제40조(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)**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의원 2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.

**제41조(의안의 이송)** 입법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.

## 제6장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와 국정조사

**제42조(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)**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·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과 대법원장·감사원장·헌법위원회위원장·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 
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.

**제43조(국무위원등의 발언)** 국무총리·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44조(조사·서류제출요구)**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·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  
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.  
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법률에서 그 보고와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 제7장 청원

**제45조(청원서의 제출과 회부)** ① 입법회의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 
 ②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  
 ③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.

**제46조(청원심사)** ①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  
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.  
 ③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,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47조(정부이송과 처리통지)** ① 입법회의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.  
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8장 보칙

**제48조(직원의 파견요청등)** ① 의장은 행정기관·법원·군·교육기관·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를 입법회의의 직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**제49조(수당과 여비)** 의원·전문위원 및 직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.

**제50조(규칙제정)** 입법회의는 그 내부규칙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**제51조(준용)** 입법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회법,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과 기타 법령중 국회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**부칙** <제3260호, 1980.10.28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시행기간)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③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, 이 법 시행당시의 의원은 이 법에 의한 의원의 임명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가진다.

④(동전) 이 법 시행당시의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이 법에 의한 사무처 및 도서관으로 보며,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.

[89헌마32·33(병합) 1989.12.18

국가보위입법회의법(1980. 10. 28. 법률 제3260호) 부칙 제4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된다.]